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3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6. 9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언이유

방문객수가 저조한 월요일(他요일 평균대비 60% 이하)을 전시와 체험을 하는 유사시설의 사례와 같이 휴관하고자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우호관의 휴관일에 ‘매주 월요일’을 추가(안 제5조)

- 제5조(개관 및 휴관) ② 우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월요일 ☞ 추가

2. 1월 1일, 설날연휴, 추석연휴

3. 조례안 : 붙임 참고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4) 입법예고(2020. 4. 29. ~ 2020. 5. 19.) 결과 : 의견 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매주 월요일
2. 1월 1일, 설날연휴, 추석연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 (생 략)	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우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	② ----- -----.
1. <u>매년 1월 1일</u>	1. <u>매주 월요일</u>
2. <u>설날 및 추석 연휴</u>	2. <u>1월 1일, 설날연휴, 추석연휴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